

의안번호	2216188
의 퇴 인	정혜경의원
회 답 일	2026.5.7.
추계번호	26D0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비례대표시·도의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29억 1,600만원, 2030년 527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1,953억 4,100만원(연평균 390억 6,8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합계	연평균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비율 상향 조정 (안 제22조제4항)	10,741	10,625	10,853	11,090	16,776	60,085	12,017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운영 (안 제26조제2항)	22,175	25,143	25,711	26,303	35,924	135,256	27,051
합계	32,916	35,768	36,564	37,393	52,700	195,341	39,068

주: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비율 상향 조정(안 제22조제4항),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운영(안 제26조제2항)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제4항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이 경우 단수는 1로 봄	의무규정
2	안 제23조제3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 경우 단수는 1로 봄	의무규정
3	안 제26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	의무규정
4	안 제26조제2항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2조제4항 (시·도의회 의원정수)	○	—
2	안 제23조제3항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	—	자치구·시·군의회 총 정수 내에서 비례대표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의원정수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3	안 제26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X	현행법 제22조제1항 등 지역구시·도의원 총 정수와 관련된 조항들과의 관계 및 해석에 따라 지역구시·도의원 정수 확대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4	안 제26조제2항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비례대표시·도의원 비율 상향 조정(안 제22조제4항), 자치구·시·군의회선거 중대선거구제 운영(안 제26조제2항)에 한하여 추계하기로 함
 - 현행법은 하나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확대하여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 운영 시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워 본 추계에서는 선거관리비용은 제외하기로 함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은 70명, 자치구·시·군의원 수는 총 209명(지역구 167명, 비례대표 42명)으로 가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구별 시·도의원 정수에 20%를 적용하고 단수를 1로 하여 산출한 결과,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 정수는 70명으로 추정
 -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의원정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추가재정소요 예상
 - 반면, 자치구·시·군의원의 총 정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례대표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총 정수 내에서 조정되므로 의원정수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운영의 경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시범적으로 30곳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해당 선거구의 자치구·시·군의원정수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확인
 - 이에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직전 지방선거의 자치구·시·군의원정수가 7%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총 209명(=2,988명×7%)으로 추정한 후, 개정안에서 비례대표 비율을 20%로 규정한 점을 반영하여 지역구 167명, 비례대표 42명으로 가정
 - 세부적인 선거구 조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변동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는 매년 지출되는 비례대표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의정활동 관련 비용¹⁾과 정책지원관 관련 비용,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기탁금 수입과 선거비용보전액을 포함
 - 본 추계에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의 연령을 모두 60세 미만으로 가정하여 국민연금을 추계기간 동안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경우,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고, 일반직지방공무원 6급

1)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포함)

과 7급 이하로 채용²⁾

- 이에 본 추계에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 2명 당 1명의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 6급, 자치구·시·군의원 2명 당 1명의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 7급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³⁾

□ 개정안 부칙에서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비율 상향 조정(안 제22조제4항)

- 개정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비례대표시·도의원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지원관 보수 지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와 관련된 기탁금 수입과 선거비용보전액
- 본 추계에서는 각 항목별 인원과 1인당 비용 등을 곱하여 재정소요와 재정수입을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의정활동) 증가되는 비례대표시·도의원 수에 1인당 비용을 곱하여 산출
 - (인원)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은 70명
 - (1인당 비용) 비례대표시·도의원 1인당 비용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2.1%	2.3%	2.0%	2.0%	2.0%

부담금, 기본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포함), 자산취득비(2026년에만 발생)를 말함

- 추계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는 동일하고, 월정수당은 2025년 증가율 2.3%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기본경비는 인건비성 경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대비 기본경비 비율 40.4%⁴⁾를 적용하여 산출
- 기관부담금은 월정수당에 요율⁵⁾을 곱하여 산정하고,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1인당 498만원 적용(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

[표 2] 비례대표시·도의원 1인당 비용(연간)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의정활동비(a)	2,400	2,400	2,400	2,400	2,400
월정수당(b)	4,405	4,506	4,610	4,716	4,824
기관부담금(c=b×기관부담금요율)	600	630	662	696	732
기본경비(d=(a+b)×기본경비 비율)	2,225	2,258	2,292	2,327	2,362
1인당 비용(=a+b+c+d)	9,630	9,795	9,964	10,139	10,318
자산취득비	498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정책지원관) 비례대표시·도의원 증가에 따른 정책지원관 인원에 1인당 비용을 곱하여 산출

- (인원) 비례대표시·도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므로 개정안에 따라 35명 증원
 -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 수는 총 70명이므로 정책지원관은 35명을 두는 것으로 가정
- (1인당 비용)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 6급으로 채용하며 1인당 비용은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말함
 -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

4) 내고장알리미의 의회운영 관련 2025년 기준 예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

5)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고용 및 산재보험은 해당하지 않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요율(장기요양보험 포함)을 합쳐 2026년 8.816%, 2027년 9.13%, 2028년 9.444%, 2029년 9.786%, 2030년 10.130%

정」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른 연봉하한액의 120%를 적용⁶⁾

- 수당은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1명 기준, 월 90,000원) 및 특수업무수당(지방의 회사무기구 근무공무원에게 지급),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반영
- 연가보상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표 3]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6급) 보수: 2026년 기준

(단위: 천원)

	봉급	수당	실비변상	합 계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6급)	69,250	1,800	4,140	75,190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6년 기준 보수는 추계기간 동안 최근 3년(2024~2026년)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3.0%에 따라 상승
- 기관부담금은 보수에 요율⁷⁾, 기본경비는 보수에 20.5%⁸⁾를 곱하여 산출하고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1인당 498만원 적용(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

[표 4] 시·도의회 정책지원관(6급) 1인당 비용(연간)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보수(a)	7,519	7,745	7,977	8,216	8,463
기관부담금(b=a×기관부담금요율)	983	1,017	1,052	1,092	1,132
기본경비(c=a×기본경비 비율)	1,957	2,003	2,051	2,100	2,151
1인당 비용(=a+b+c)	10,458	10,765	11,080	11,408	11,746
자산취득비	498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7)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의 기관부담금요율은 2026년 13.067%, 2027년 13.129%, 2028년 13.193%, 2029년 13.285%, 2030년 13.379%

8)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서 인력운영비(39조 6,999억원) 대비 기본경비등(8조 1,503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5%

□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과 2030년에만 발생하며 후보자 수는 172명으로 가정하고, 1인당 기탁금 귀속액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며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증가

- 후보자 수는 직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비례대표시·도의원 정수 대비 후보자 수 비율(2.45배)을 활용하여 추정하면 172명
-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 중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후보자 수의 비율은 38.6%이고 국고에 귀속되는 1인당 기탁금은 252만원⁹⁾
- 비례대표 후보자의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2,722만원¹⁰⁾이며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에 따라 상승

[표 5]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의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	3,014	-	-	-	3,261
1인당 기탁금 귀속액	252	-	-	-	2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기탁금 반환 대상이 되지 못한 비례대표 후보자 88명의 총 귀속액은 2억 2,170만원으로 1인당 약 252만원

10)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비례대표시·도의원에 대한 선거비용보전액은 총 62억 659만원이고 후보자 수는 228명으로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약 2,722만원으로 추정

- 추계결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7억 4,100만원, 2030년 167억 7,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600억 8,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비례대표시·도의원 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합계
의정 활동	인원(a, 명)	70	70	70	70	70	—
	1인당 비용(b, 만원)	4,815	9,795	9,964	10,139	10,318	—
	연간 비용(c=a×b, 백만원)	3,371	6,857	6,975	7,097	7,223	—
	자산취득비(d=a×498만원, 백만원)	349	—	—	—	—	—
	소계(e=c+d, 백만원)	3,720	6,857	6,975	7,097	7,223	31,872
정책 지원	인원(f, 명)	35	35	35	35	35	—
	1인당 비용(g, 만원)	5,229	10,765	11,080	11,408	11,746	—
	연간 비용(h=f×g, 백만원)	1,830	3,768	3,878	3,993	4,111	—
	자산취득비(i=f×498만원, 백만원)	174	—	—	—	—	—
	소계(j=h+i, 백만원)	2,004	3,768	3,878	3,993	4,111	17,754
선거	후보자 수(k, 명)	172	—	—	—	172	—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l, 만원)	3,014	—	—	—	3,261	—
	보전액(m=k×l 백만원)	5,184	—	—	—	5,609	10,793
	1인당 기탁금 귀속액(n, 만원)	252	—	—	—	252	—
	기탁금 수입(o=k×n, 백만원)	167	—	—	—	167	334
추가재정소요(=e+j+m-o, 백만원)		10,741	10,625	10,853	11,090	16,776	60,085

주: 2026년 의정활동 및 정책지원관 항목의 경우,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므로 연간 지급액은 6개월치만 산정하였고, 선거항목의 기탁금 수입은 후보자 수(k)에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후보자 비율 38.6%(비례대표 시·도의원 기준)와 1인당 기탁금 귀속액(n)을 곱하여 산출함

나.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운영(안 제26조제2항)

- 개정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자치구·시·군의원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수 지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와 관련된 기탁금 수입과 선거비용보전액
- 본 추계에서는 각 항목별 인원과 1인당 비용 등을 곱하여 재정소요와 재정수입을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의정활동 지원) 증가되는 자치구·시·군의원 수에 1인당 비용을 곱하여 산출
 - (인원)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지역구 167명, 비례대표 42명으로 총 209명 증가
 - (1인당 비용) 자치구·시·군의원 1인당 비용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포함), 자산취득비(2026년에만 발생)를 말함
 - 추계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는 동일하고, 월정수당은 2025년 증가율 2.3%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기본경비는 인건비성 경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대비 기본경비 비율 40.4%¹¹⁾를 적용하여 산출
 - 기관부담금은 월정수당에 요율¹²⁾을 곱하여 산정하고,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1인당 498만원 적용(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

[표 7] 자치구·시·군의원 1인당 비용(연간)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의정활동비(a)	1,800	1,800	1,800	1,800	1,800
월정수당(b)	3,126	3,198	3,272	3,347	3,424
기관부담금(c=b×기관부담금요율)	276	292	309	328	347
기본경비(d=(a+b)×기본경비 비율)	1,990	2,019	2,049	2,079	2,110
1인당 비용(=a+b+c+d)	7,192	7,309	7,430	7,554	7,681
자산취득비	498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1) 내고장알리미의 의회운영 관련 2025년 기준 예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

12)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고용 및 산재보험은 해당하지 않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요율(장기요양보험 포함)을 합쳐 2026년 8.816%, 2027년 9.13%, 2028년 9.444%, 2029년 9.786%, 2030년 10.130%

□ (정책지원관) 자치구·시·군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정책지원관 증원 인원에 1인당 비용을 곱하여 산출

- (인원) 자치구·시·군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므로 개정안에 따라 105명 증원
 -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자치구·시·군의원 수는 총 209명이므로 정책지원관은 105명을 두는 것으로 가정
- (1인당 비용) 자치구·시·군의회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 7급으로 채용하며 1인당 비용은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말함
 -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른 연봉하한액의 120%를 적용¹³⁾
 - 수당은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1명 기준, 월 90,000원) 및 특수업무수당(지방의회사무기구 근무공무원에게 지급),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반영
 - 연가보상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표 8]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7급) 보수: 2026년 기준

(단위: 천원)

	봉급	수당	실비변상	합 계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7급)	60,326	1,680	4,080	66,086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6년 기준 보수는 추계기간 동안 최근 3년(2024~2026년)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3.0%에 따라 상승
- 기관부담금은 보수에 요율¹⁴⁾, 기본경비는 보수에 20.5%¹⁵⁾를 곱하여 산출하고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1인당 498만원 적용(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

1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14)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의 기관부담금요율은 2026년 13.067%, 2027년 13.129%, 2028년 13.193%, 2029년 13.285%, 2030년 13.379%

15)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서 인력운영비(39조 6,999억원) 대비 기본경비등(8조 1,503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5%

[표 9] 자치구·시·군의회 정책지원관(7급) 1인당 비용(연간)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보수(a)	6,609	6,807	7,011	7,222	7,438
기관부담금(b=a×기관부담금요율)	864	894	925	959	995
기본경비(c=a×기본경비 비율)	1,770	1,811	1,853	1,896	1,941
1인당 비용(=a+b+c)	9,243	9,512	9,789	10,078	10,375
자산취득비	498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과 2030년에만 발생하며 후보자 수는 지역구 286명, 비례대표 74명으로 가정하고, 1인당 기탁금 귀속액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며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

- 후보자 수는 직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 대비 후보자 수 비율(지역구 1.71배, 비례대표 1.76배)를 활용하여 추정하면 지역구 286명, 비례대표 74명
-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 중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후보자 수의 비율은 지역구 15.7%, 비례대표 20.4%이고 국고에 귀속되는 1인당 기탁금은 지역구 268만원, 비례대표 183만원¹⁶⁾
-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지역구 2,346만원, 비례대표 1,267만원¹⁷⁾이며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에 따라 상승

[표 10]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	지역구	2,597	-	-	-	2,810
	비례대표	1,403	-	-	-	1,518
1인당 기탁금 귀속액	지역구	268	-	-	-	268
	비례대표	183	-	-	-	1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6) 기탁금 반환 대상이 되지 못한 지역구 후보자 698명의 총 귀속액은 18억 6,830만원으로 1인당 약 268만원, 동일한 경우로 비례대표 후보자 139명의 총 귀속액은 2억 5,400만원으로 1인당 약 183만원

17)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에 대한 선거비용보전액은 총 1,042억 8,945만원이고 후보자 수는 4,445명으로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약 2,346만원으로 추정되고 비례대표의 경우 총 86억 1,759만원에 후보자 수는 680명으로 1인당 약 1,267만원으로 추정

- 추계결과,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 221억 7,500만원, 2030년 359억 2,4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1,352억 5,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합계
의정 활동	인원(a, 명)		209	209	209	209	209	—
	1인당 비용(b, 만원)		3,561	7,251	7,384	7,522	7,664	—
	연간 비용(c=a×b, 백만원)		7,442	15,155	15,433	15,721	16,018	—
	자산취득비(d=a×498만원, 백만원)		1,041	—	—	—	—	—
	소계(e=c+d, 백만원)		8,483	15,155	15,433	15,721	16,018	70,810
정책 지원	인원(f, 명)		105	105	105	105	105	—
	1인당 비용(g, 만원)		4,621	9,512	9,789	10,078	10,375	—
	연간 비용(h=f×g, 백만원)		4,852	9,988	10,278	10,582	10,894	—
	자산취득비(i=f×498만원, 백만원)		523	—	—	—	—	—
	소계(j=h+i, 백만원)		5,375	9,988	10,278	10,582	10,894	47,117
선거	후보자 수(k, 명)	지역구	286	—	—	—	286	—
		비례대표	74	—	—	—	74	—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 (l, 만원)	지역구	2,597	—	—	—	2,810	—
		비례대표	1,403	—	—	—	1,518	—
	보전액(m=k×l, 백만원)		8,465	—	—	—	9,160	17,625
	1인당 기탁금 귀속액 (n, 만원)	지역구	268	—	—	—	268	—
		비례대표	183	—	—	—	183	—
	기탁금 수입(o=k×n, 백만원)		148	—	—	—	148	296
추가재정소요(=e+j+m-o, 백만원)			22,175	25,143	25,711	26,303	35,924	135,256

주: 2026년 의정활동 및 정책지원관 항목의 경우,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므로 연간 지급액은 6개월치만 산정하였고, 선거항목의 기탁금 수입은 후보자 수에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후보자 비율(지역구 15.7%, 비례대표 20.4%), 1인당 기탁금 귀속액을 곱하여 산출함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비례대표시·도의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자치구·시·군의 원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29억 1,600만원, 2030년 527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1,953억 4,100만원 (연평균 390억 6,8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합계	연평균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비율 상향 조정 (안 제22조제4항)	10,741	10,625	10,853	11,090	16,776	60,085	12,017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운영 (안 제26조제2항)	22,175	25,143	25,711	26,303	35,924	135,256	27,051
합계	32,916	35,768	36,564	37,393	52,700	195,341	39,068

주: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수,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 기탁금 국고 귀속률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